

1999 년 법률 제 472 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차례

제 1 장 총칙(제 1 조, 제 2 조)

제 2 장 행정문서의 공개(제 3 조~제 17 조)

제 3 장 심사청구 등 (제 18 조-제 21 조)

제 4 장 보칙 (제 22 조-제 26 조)

부칙

## 제 1 장 총칙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국민주권의 이념에 따라 행정문서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더욱 확대하여 정부가 지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국민에게 설명할 책무를 다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정확한 이해와 비판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의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이 법률에서 "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내각에 설치된 기관(내각부 제외) 및 내각의 소관 하에 설치된 기관
- 2 내각부, 궁내청 및 내각부설치법(1999 년 법률 제 89 호) 제 49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기관 (이들 기관 중 제 4 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제외.)
- 3 국가행정조직법(1948 년 법률 제 120 호) 제 3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관(제 5 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된 기관에 있어서는 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제외.)
- 4 내각부설치법 제 39 조 및 제 55 조 및 궁내청법(1947 년 법률 제 70 호) 제 16 조 제 2 항의 기관 및 내각부설치법 제 40 조 및 제 56 조(궁내청법 제 18 조 제 1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특별기관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 5 국가행정조직법 제 8 조의 2 의 시설 등 기관 및 같은법 제 8 조의 3 의 특별기관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 6 회계검사원

② 이 법률에서 "행정문서"란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도화 및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타인의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해당 행정기관의 직원이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

- 1 관보, 백서, 신문, 잡지, 서적 기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
- 2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 66호) 제 2조 제 7항에 규정된 특정역사공문서 등
- 3 정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기타의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사적 또는 문화적 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자료로서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것(전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 제 2 장 행정문서 공개

(정보공개청구권)

**제 3 조** 누구든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전조 제 1항 제 4호 및 제 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그 기관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문서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개청구 절차)

**제 4 조** 전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청구(이하 "공개청구"라 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개청구서"라 함)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서 하여야 한다.

- 1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법인 기타의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2 행정문서의 명칭 기타 공개청구하는 행정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서에 형식상 미비점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청구를 한 자(이하 "공개청구자"라 함.)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자에게 보정에 참고로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문서 공개 의무)

**제 5 조**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공개청구된 행정문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함.)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청구자에게 해당 행정문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개인에 관한 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해당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이자,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기타의 기술 등(문서, 도화 또는 전자적 기록에 기재되거나 기록 되고, 또는 음성, 동작 기타의 방법으로 표현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다음 조 제 2항에서 같다.)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대조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또는 관행적으로 공개되어 또는 공개될 예정인 정보
  - 나.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 정보

다. 해당 개인이 공무원 등(국가공무원법(1947년 법률 제 120호) 제 2조 제 1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 103호) 제 2조 제 4항에 규정된 행정집행법인의 임원 및 직원을 제외한다.), 독립행정법인등(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 140호. 이하 '독립행정법인등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 2조 제 1항에 규정된 독립행정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원 및 직원, 지방공무원법(1950년 법률 제 261호) 제 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 118호) 제 2조 제 1항에 규정된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인 경우, 해당 정보가 그 직무수행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 중 해당 공무원 등의 직위 및 해당 직무수행의 내용에 관한 부분

- 1.의 2.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 57호) 제 60조 제 3항에 규정된 행정기관 등 익명가공정보(같은 조 제 4항에 규정된 행정기관 등 익명가공정보파일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행정기관 등 익명가공정보"라 함.) 또는 행정기관 등 익명가공정보의 작성에 사용한 같은 조 제 1항에 규정된 보유 개인정보에서 삭제한 같은 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규정된 기술 등 또는 같은 조 제 2항에 규정된 개인식별부호
- 2.법인 기타의 단체(국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법인 등'이라 함.)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해당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다.
  - 가. 공개함으로써 해당 법인 등 또는 해당 개인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나.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의로 제공된 것으로서 법인 등 또는 개인의 관례상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기타 해당 조건을 붙이는 것이 정보의 성격,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 3.공개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국 또는 국제기관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타국 또는 국제기관과의 협상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4.공개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공소의 유지, 형의 집행,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국가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 내부 또는 상호간의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솔직한 의견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국민 사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6.국가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다음에 열거하는 우려가 있거나 기타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가. 감사, 검사, 단속, 시험 또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의 파악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  
 나. 계약, 협상 또는 분쟁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국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재산상 이익 또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해칠 우려  
 다.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그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부당하게 저해할 우려  
 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마.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그 기업경영상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부분 공개)

**제 6 조**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된 행정문서의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비공개 정보가 기록된 부분을 쉽게 구분하여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자에게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유의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청구된 행정문서에 전조 제 1 호의 정보(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기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의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같은 호의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익적 사유에 의한 재량적 공개)

**제 7 조**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된 행정문서에 비공개 정보(제 5 조 제 1 호의 2 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라도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자에게 해당 행정문서를 공개할 수 있다.

(행정문서의 존재 여부에 관한 정보)

**제 8 조** 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공개청구에 관한 행정문서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답변만으로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문서의 존재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 해당 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공개청구에 대한 조치)

**제 9 조**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된 행정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한다는 결정을 하고, 공개청구자에게 그 결정 및 공개 실시에 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된 행정문서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전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및 공개청구된 행정문서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공개청구자에게 그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 결정 등의 기한)

**제 10 조** 전조 각항의 결정(이하 "공개결정등"이라 한다)는 공개청구의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에 소요된 일수는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의 어려움이나 기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을 30 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연장 후의 기간 및 연장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결정 등의 기한 특례)

**제 11 조** 공개청구된 행정문서가 현저하게 많아서 공개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그 전부에 대하여 공개 결정 등을 함으로써 사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된 행정문서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해당 기간 내에 공개 결정 등을 하고, 나머지 행정문서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공개결정 등을 하면 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청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본조를 적용한다는 것 및 그 이유

2 나머지 행정문서에 대해 공개결정 등을 하는 기한

(사안 이송)

**제 12 조**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된 행정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에서 작성된 것일 때, 기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결정 등을 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안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자에게 사안을 이송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안이 이송된 경우에는 이송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이송 전에 한 행위는 이송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전항의 경우에 이송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 9 조 제 1 항의 결정(이하 "공개결정"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개의 실시를 위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독립행정법인 등으로의 사안 이송)

**제 12 조의 2**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된 행정문서가 독립행정법인등으로 작성된 것일 때, 기타 독립행정법인등에서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 10 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개결정 등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독립행정법인등과 협의하여 해당 독립행정법인등에 대해 사안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자에게 사안을 이송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안이 이송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문서를 이송받은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 2 조 제 2 항에 규정된 법인문서와 공개청구를 이송받은 독립행정법인등에 대한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 4 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개청구로 간주하여 독립행정법인등 정보공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독립행정법인등 정보공개법 제 10 조 제 1 항 중 "제 4 조 제 2 항"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 42호) 제 4 조 제 2 항"으로, 독립행정법인등 정보공개법 제 17 조 제 1 항 중 "공개청구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문서"는 "법인 문서"로, "에 따라 각각"은 "에 따라"으로, "공개청구에 관한 수수료 또는 공개"는 "공개"로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사안이 이송된 경우, 이송을 받은 독립행정법인등이 공개의 실시를 하는 경우, 이송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개의 실시를 위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3 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등)

**제 13 조** 공개청구된 행정문서에 국가, 독립행정법인등, 지방자치단체, 지방독립행정법인 및 공개청구자 외의 자(이하 이 조, 제 19 조 및 제 20 조제 1 항에서 "제 3 자"라 함)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에 관한 제 3 자에게 공개청구된 행정문서의 표시 기타 정령으로 정한 사항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결정에 앞서 해당 제 3 자에게 공개청구된 행정문서의 표시, 기타 정령으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제 3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3 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행정문서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제 5 조 제 1 호 나 또는 같은 조 제 2 호 단서에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 3 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 행정문서를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앞의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은 제 3 자가 해당 행정문서 공개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하는 날과 공개를 실시하는 날 사이에 적어도 2 주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결정 후 즉시 해당 의견서(제 19 조에서 "반대의견서"라 함.)를 제출한 제 3 자에게 공개결정을 한 사실과 그 사유 및 공개를 실시하는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 실시)

제 14 조 행정문서의 공개는 문서 또는 도화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에 의하고, 전자적 기록에 대하여는 그 종별, 정보화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열람의 방법에 의한 행정문서의 공개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문서의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② 공개결정에 따라 행정문서의 공개를 받는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개결정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요구하는 공개 실시 방법 기타 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해당 신청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공개결정에 따라 행정문서의 공개를 받은 자는 최초로 공개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한하여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추가로 공개를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령에 의한 공개 실시와의 조정)

제 15 조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개청구된 행정문서가 전조 제 1 항 본문에 규정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공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한정한다.) 에는 같은 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문서에 대해서는 해당 동일한 방법에 의한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공개 방법이 종람(縱覽)인 경우에는 해당 종람을 전조 제 1 항 본문의 열람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수수료)

제 16 조 공개청구를 하는 자 또는 행정문서의 공개를 받는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개청구에 관한 수수료 또는 공개 실시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수수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이용하기 쉬운 금액이 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적 어려움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 항의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사무의 위임)

**제 17 조** 행정기관의 장은 정령(내각 소관 기관 및 회계감사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규정된 권한 또는 사무를 해당 행정기관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3 장 심사청구 등

(심리원에 의한 심리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등)

**제 18 조** 공개결정 등 또는 공개청구에 관한 부작위에 관한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이의심사법(2014년 법률 제 68호) 제 9조, 제 17조, 제 24조, 제 2장 제 3절 및 제 4절 및 제 50조 제 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공개결정 등 또는 공개청구에 관한 부작위에 관한 심사 청구에 관한 행정이의심사법 제 2장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 11조 제 2항 중 "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심리원"이라 함.)"는 "제 4조(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 42호) 제 20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정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된 행정청(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를 받은 행정청을 포함한다. 이하 "심사청"이라 한다)"로, 같은 법 제 13조 제 1항 및 제 2항 중 "심리원"은 "심사청"으로, 같은 법 제 25조 제 7항 중 "있었을 때 또는 심리원으로부터 제 40조에 규정된 집행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있었을 때"로, 같은 법 제 44조 중 "행정이의심사회 등"은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심사회(심사청이 회계감사원의 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심사회. 제 50조 제 1항 제 4호에서 같다)"로, "받은 때(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같은항 제 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심리원 의견서가 제출되었을 때, 같은항 제 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 2호 또는 제 3호에 규정된 의결을 거친 때)"는 "받은 때"로, 같은 법 제 50조 제 1항 제 4호 중 "심리원 의견서 또는 행정이의심사위원회 등 또는 심의회 등"은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로 한다.

(심사회에 대한 자문)

**제 19 조** 공개결정 등 또는 공개청구에 관한 부작위에 대해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회계감사원의 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심사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1 심사 청구가 부적법으로써 각하하는 경우
- 2 재결에서 심사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해당 심사청구에 관한 행정문서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해당 행정문서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를 제외)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문을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심사청구인 및 참가인(행정이의심판법 제 13 조 제 4 항에 규정된 참가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같다).
  - 2 공개청구자(공개청구자가 심사청구자 또는 참가인인 경우를 제외)
  - 3 해당 심사청구에 관한 행정문서의 공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한 제 3 자(해당 제 3 자가 심사청구자 또는 참가인인 경우를 제외)

제 3 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의 절차 등)

**제 20 조** 제 13 조 제 3 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결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1 공개 결정에 대한 제 3 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재결
- 2 심사청구된 공개결정 등(공개청구에 관한 행정문서의 전부를 공개한다는 결정은 제외한다.)을 변경하여 해당 심사청구에 관한 행정문서를 공개한다는 취지의 재결(제 3 자인 참가인이 해당 행정문서의 공개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한다.)
- ② 공개결정 등 또는 공개청구에 관한 부작위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이의심사법 제 4 조의 규정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소송 이송의 특례)

**제 21 조** 행정사건소송법(1962년 법률 제 139 호) 제 12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에 규정된 특정 관할법원에 공개결정등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 또는 공개결정등 또는 공개청구에 관한 부작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다음 항 및 부칙 제 2 항에서 "정보공개소송"이라 한다)이 제기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2 조제 5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원에 동일 또는 동종 또는 유사한 행정문서에 관한 공개결정등 또는 공개결정 또는 공개청구에 관한 부작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한 항고소송(같은 법 제 3 조제 1 항에 규정된 항고소송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심문을 받아야 할 증인의 주소, 쟁점 또는 증거의 공통성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다른 법원 또는 같은 법 제 12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규정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행정사건소송법 제 12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에 규정된 특정관할법원에 공개결정등 또는 공개결정등 또는 공개청구에 관한 부작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으로써 정보공개소송 외의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보칙

(공개청구를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 22 조**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쉽고 정확하게 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것과 기타 해당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문서의 특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 기타 공개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총무대신은 이 법률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청구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소를 정비하여야 한다.

(시행상황 공개)

**제 23 조** 총무대신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총무대신은 매년도 전향의 보고를 정리하여 그 개요를 공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의 충실화)

**제 24 조** 정부는 그 보유 정보의 공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의 충실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제 25 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그 보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위임)

**제 26 조** 이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부칙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2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3 조제 1 항 중 양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에 관한 부분, 제 40 조부터 제 42 조까지 및 다음 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정부는 이 법률 시행 후 4 년을 목표로 이 법률의 시행 상황 및 정보공개소송의 바람직한 관할권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